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11. 16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행정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함

2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통합
-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 변경
(2년 거치 1년 상환 → 3년 거치 2년 상환)

3. 근거법령

- 첨 부 : 1.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구조문 대비표
3. 기타 참고자료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 조제목중 "(세입.세출)"을 "(용자금의 조성 및 용도)"로 하고 동조 제1항중 "특별회계의 세입은"을 "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중 "특별회계의 세출은"을 "이 자금의 용도는"으로 하고 "용자금으로 한다."를 "용자금으로 지출한다."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중 "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"를 각각 "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"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중 "2년거치 1년상환"을 "3년거치 2년상환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4. 1. 1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.세출에 이입한다.